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상협정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근거 마련 등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40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근거 마련 등	3
2. 원산지증명 관련 관세청 자료 요청	9
3.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11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4.
3. 회부연월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 활용 상담·컨설팅·교육·홍보·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지속가능성·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대외 시장개방, 무역통상 관련 국제조약 또는 협정을 “통상협정”으로 정의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3제1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통상협정”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 그 밖에 무역·통상에 관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적 조약 또는 협정을 말한다.
<u><신설></u>	제8조의3(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통상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

현행	개정안
	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협정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⑥ (생략)

현재 산업통상부는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1935-301) 사업¹⁾으로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수출기업의 통상애로 통합콜센터 및

1) 2026년도 예산액 102억 2,900만원

□ 사업목적 및 내용

- 기발효 FTA의 성과 극대화 및 신규타결 FTA 확대에 따른 활용지원 정책의 보완·시행을 통한 FTA 활용률 제고
- (내역사업 : ① 중소기업 FTA활용지원)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FTA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상담·설명회 등 지원
- (내역사업 : ② FTA 전문인력양성) FTA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일반국민(기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무교육 지원
- (내역사업 : ③ 통상협정 국내대책이행) FTA 이행상황 평가·성과분석 등을 위한 정책사업비 지원(FTA이행상황평가) 및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원)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내역사업①-개정안 제1호 및 제3호),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내역사업②-개정안 제2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내역사업③-개정안 제4호)하는 등 통상협정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애로사항은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그런데 이 중 일부 내역사업(③)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²⁾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6조³⁾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제19조(농업·축산업·수산업 보호·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축산업·수산업의 보호·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통상대응지원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3. 삭제 <2016. 1. 6.>

③~⑥ (생략)

다른 내역사업(①, ②)은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부훈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통상협정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기에 앞서 통상협정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기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국회 동의 대상인 통상조약⁴⁾ 외에도 대외 시장 개방, 무역·통상과 관련된 국제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틀어 ‘국제협정’으로 정의하고, 이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표 2] 국제조약의 유형(외교부)

유형	내용 및 특징
조약 (Treaty)	- 가장 격식을 따지는 것으로 정치적·외교적 기본 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 예) 한-러시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3)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조약”이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조약 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을 말한다.
 - 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나.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다.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2. “통상협상”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등과 하는 협상을 말한다.

유형	내용 및 특징
규약 (Covenant) 헌장 (Charter) 규정 (Statute)	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다자 간 국제 합의에 가장 많이 사용 예)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등
협정 (Agreement)	비정치적인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 예) 한-르완다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2023)
협약 (Convention)	- 특정 분야나 기술적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 - 국제기구 주관하에 개최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교회의에서 체결하는 다자조약에 사용 예) 한-캄보디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2021),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61)
의정서 (Protocol)	주로 기본적인 문서를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의 조약에 사용 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2019), 만국우편연합헌장 제11추가의정서(2022)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한 국가의 대표가 제안하는 각서를 보내면 상대편 국가의 대표가 그에 회답하는 각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주로 기술적 성질의 사항에 사용 예) 한-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2015)

자료: 「알기쉬운 조약 및 기관간 약정 업무(2023)」, 외교부

참고로 현재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사업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부훈령)은 ‘통상협정’을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협정”으로 정의하고(그 외 조문 참고자료 참조),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 등’을 “통상조약 등 무역·

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원산지증명 관련 관세청 자료 요청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 신설).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무역거래자의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현재 산업통상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매월 기업규모별·업종별·협정별로 FTA 수출활용률((FTA 특혜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금액 / FTA 특혜품목의 수출금액)×100) 통계를 제공받고, 이를 활용하여 활용저조 업종 및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근거 없이 관계 행정기관간 협조에 따라 자료제공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개정안은 자료요청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함.

다만, 관세청은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향후 자료요청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기업의 민감정보가 넓게 요청·활용되어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비밀유지원칙⁵⁾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대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활용 관련 통계’ 등으로 자료요청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⁶⁾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5)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법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가.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라. 그 밖에 급부·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참고로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매월 기업규모별·업종별·(FTA)협정별로 각각 합쳐진 활용률(sum data)을 받고 있고, 개별 기업의 통관자료(raw data)는 요청·제공되지 않고 있음.

3.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지원 및 지정취소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활용지원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제3항~제6항 신설).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 등) ① ~ ②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현행	개정안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훈령인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7) 및 제5장8)에 따라 FTA통상종합지원센터(한국무역협회 본부 내)를 중심으로 국내외 권역별로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11개 해외FTA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7)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사업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반을 총괄, 조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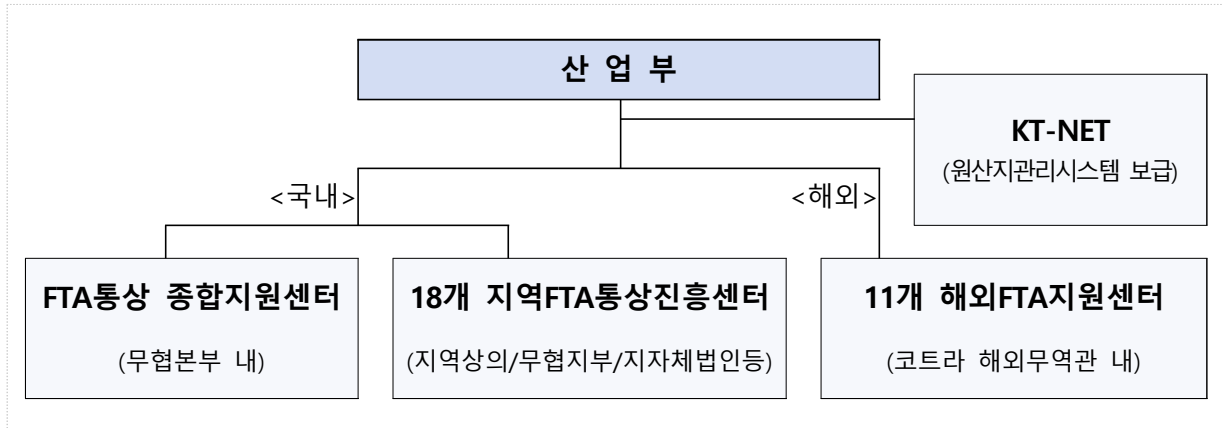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하려는 지원사업의 취지, 성격,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에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사업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과 개별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관리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8) 제5장 FTA·통상 종합지원센터 · 지역FTA통상진흥센터 · FTA해외활용지원센터

[표 5] FTA 활용지원 사업 추진체계



* 해외센터 현황 : 중국 2(북경·광저우), 베트남 2(하노이·호치민), 인니 1(자카르타), 인도 1(뉴델리), 태국 1(방콕), 필리핀 1(마닐라), 캄보디아 1(프놈펜), 일본 1(도쿄), 말련 1(콜라룸푸르)

개정안은 통상협정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용지원기관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써,

안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업무상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안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지정취소 근거조항⁹⁾을 신설함으로써 지원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9) 현행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은 성과평가 2년 연속 최하위 센터의 경우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나(\$30), 지정취소 규정은 없음.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협정”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협정을 말한다.
2.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이란 우리나라가 타국 또는 지역무역 연합체와 체결한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협정을 말한다.
3.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의 자율적인 통상협정 활용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4.~9. (생략)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보·상담 서비스 제공, FTA 1380 콜센터 운영 지원
2.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인증, 지식재산권 등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지원
3. 통상협정 활용, 통상협정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 지원
4. FTA 원산지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급 지원
5. 전주기 FTA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6. 지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정부간 통상 관련 현장 소통 채널 구축 지원
7.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수출지원기관 등과 연계·협력 지원
8. 지역 유망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9. 통상협정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